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12월 9일

○ 회부일자 : 1999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1. 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99.3.31, 대통령령 제16,213호)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정사항

- 조례제명 및 설립목적을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의거 정비
- 의료원설치조례 → 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의료원의 출자범위 확대 : 자본금 → 자본금 또는 현물
- 의료원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
 - 기금 → 자본금, 조직 → 조직 및 정원

○ 신설사항

-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규정
- 의료원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 비상임이사의 수당, 여비 지급규정
-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 지방공사 의료원의 제규정을 제·개정,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타사항

-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동 조례의 일부사항을 법령에 부합시키고 현행조례의 불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지방공기업법에 부합시키는 사항

- “충청북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정관 기재사항중 의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 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기금에 관한 사항을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6조에 부합되도록 함.

□ **현행조례의 불비사항 보완**

비밀누설금지, 공인비치, 비상임이사의 수당 및 여비지급, 권한의 위탁,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시 도지사 승인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법률과 중복 또는 불합리한 사항 정비**

의료원의 경영평가와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사회 의결사항인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한 것은 자율 및 책임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는 작년 7월에도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빈번한 조례개정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청주의료원의 자본금은 3,254,756,737원으로, 충주의료원의 자본금은 1,717,899,642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전액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자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9.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0.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과 직원

제7조 (임원) ①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2인 이내로 한다.

②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원장) ①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사업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기업 업무담당관·보건업무담당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의료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 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의료원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 (이사회) ①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업무담당관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의료원의 이익과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의료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기업업무담당관 또는 보건업무담당과장이 의료원을 대표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사 업

제16조 (사업) 의료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진료사업
2. 전염병 예방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

- 3.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 4.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5. 주민의 장의편익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
- 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사업구역) 의료원의 사업구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19조 (사업연도)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 (계리의 원칙) ①의료원은 사업의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의료원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④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손익금의 처리) ①의료원은 결산한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의료원은 결산한결과 손실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의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3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의료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조성 등) ①원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단기차입금 등) ①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②의료원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 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 독

제26조 (감독) ①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의료원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1조 (공인의 비치) 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충청북도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령 발 책 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법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1.~8 (‘생략’)
- 9. 의료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6조(정관) ①~②“생략”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동지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동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생략)

9. 의료사업 : 병상수 30개 이상

제48조(정관기제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